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173 발의연월일: 2022. 4. 8.

발 의 자 : 김상훈·강기윤·홍문표

송언석 · 정우택 · 송석준

박수영 · 이종성 · 박대출

이 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지급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,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에 대하여 근속연수, 환산급여 등을 고려한 퇴직소득공제를 한 후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고 다음 인생을 대비할 때 중요한 자금이 되고 있는바,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근로 자들이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은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려가가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음.

이에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,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

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안정적 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5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3항 본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제1항 각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퇴직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5항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퇴직소득) ① ~ ④ (생	제22조(퇴직소득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3항 본문에 따른 퇴직소
	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제
	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
	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